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9호]

# 2026년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 0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6월 30일(화) ~ 7월 17일(금) 까지 (2차)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기업
    -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총 20개사
  - ※ 잔여 20개사 추가 모집
- 주요내용 : 해외플랫폼 입점 관련 마케팅 활동 비용 지원

분야	한도	규모	비율	지원내용
① 판매/입점수수료	450만원	40개사	90%	해외 플랫폼 입점·판매 시 발생하는 관련 수수료 (계정개설 수수료, 유료회원 가입비,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
② 광고/프로모션				할인혜택 제공쿠폰, 프로모션 비용, PPC(키워드 광고) DA(배너,메인페이지 광고), 외부 트래픽 광고 라이브커머스 등
③ 콘텐츠/상세페이지				다국어 번역료,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동영상 제작(숏폼, 롱폼 등), 상품 촬영비 등 ※ 외주를 통해서만 사업 진행

## 02 세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20개사

※ 잔여 20개사 추가 모집

□ 지원내용 : 해외플랫폼 입점 관련 마케팅 활동 비용 지원

- (미국) 아마존US, 이베이, 유튜브 등 / (일본) 아마존일본, 큐텐 등
-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틱톡샵 등 / (동남아/남미) 쇼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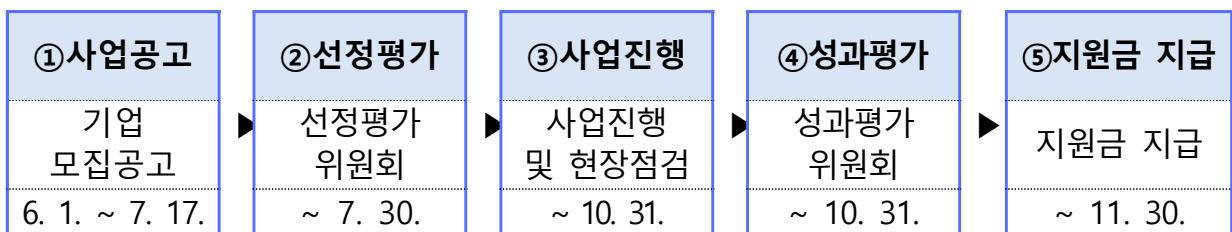
※ 상기 플랫폼 외 타 해외플랫폼(사이트) 사용 가능

분 야	해외 플랫폼 입점		
	①판매/입점 수수료	②광고/프로모션	③콘텐츠/상세페이지
세부분야	450만원 (최대한도)		
지원한도	40개사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정개설 수수료</li> <li>유료회원 가입비</li> <li>플랫폼 이용수수료 등 (월간 구독료, 판매수수료)</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인혜택 제공쿠폰, 프로모션 비용</li> <li>PPC(키워드 광고)</li> <li>DA(배너,메인페이지 광고)</li> <li>외부 트래픽 광고</li> <li>라이브커머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국어 번역료</li> <li>제품 상세페이지 제작</li> <li>동영상 제작 (숏폼,롱폼 등)</li> <li>상품 촬영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주를 통해서만 사업 진행</li> </ul>

※ 세부분야 다중선택 가능 (예시 : ① 판매계정/수수료 + ② 광고/프로모션)

※ 다중 플랫폼 선택 가능 (예시: (미국) 아마존US + (중국) 테무)

□ 지원절차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 총 사업비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산정방식(예시)		
			총 사업비	지원금(90%)	자부담(10%)
해외플랫폼	450만원	90%	500만원	450만원	50만원

### 03 지원조건 및 대상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등록공장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 ※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평택 소재여야 하고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불가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지원자격 : 법인사업자(법인명의) / 개인사업자(대표자명)
  - 지원인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①해외플랫폼 입점완료 및 ②비용지급 완료 건
    - ※ 해외플랫폼 내에서 활용 증빙 필수
  - 수행기간 : 2026. 1. 1 ~ 10. 31. (당해연도 소급적용)
-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지원불가 기업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기업 및 대기업</li> <li>◦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 [별표1 및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도·소매만 있는 경우 제외]</li> </ul>
중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업 동일 건 중복지원 받는 경우</li> <li>◦ 2026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기업 동일아이템 제외</li> </ul>
지원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부가세, 인건비, 수수료 등)</li> </ul>
인정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li> <li>◦ 개인 간 거래 금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 등)</li> </ul>
세금 체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li> </ul>
허위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내용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기업 [별표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조]</li> </ul>
불성실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성실 또는 마감이후 접수 건</li> </ul>
휴·폐업 및 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li> </ul>
참여 제한/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li> <li>◦ 사업기간 내 관외 이전한 기업</li> <li>◦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된 경우 (예외)</li> <li>- 본 사업은 선정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지원 가능</li> </ul>

## 0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6. 30.(화) ~ 7. 17.(금)

□ 신청방법 : **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pipabiz.or.kr/icu](http://pipabiz.or.kr/icu)) 접수 → 회원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업로드

※ 동시 접속으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 (사업계획서란) : 사업신청서(붙임1)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기타서류란) :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또는 알집 업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mailto:ywl0703@pipabiz.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시	① 사업신청서	▶ 붙임1. 서식 활용
	② 사업계획서	▶ 붙임2. 서식 활용
	③ 제품설명서	▶ 붙임3. 서식 활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붙임4. 서식 활용
	⑤ 약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 붙임5. 서식 활용
	⑥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⑧ 공장등록증명서	▶ 해당 시 (등록공장으로 신청 시에만 해당)
	⑨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서류)
	⑩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가능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서류)
⑪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발급 전 또는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지급시	① 사업자등록증	-
	② 통장사본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05 기업 선정 및 지급방식

### □ 기업 선정방식

1단계	적부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적/부심사
2단계	선정평가	▶ 서류평가(평가위원회 개최) 정량·정성 평가
3단계	성과평가	▶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 후 지원금 지급

1단계	적부심사	(내부) 진흥원
-----	------	----------

연번	항목	기준	결과
1	소재확인	•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등 평택 소재 기업	적합 / 부적합
2	자격요건	• 중소기업 확인서	적합 / 부적합
3	납부확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적합 / 부적합

2단계	선정평가	(외부) 위원회
-----	------	----------

구분	평가				최종 선정
	평가방식	평가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선정평가	서류평가	3~5인 외부 평가위원	정성평가	평가표 참조(6p)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기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기업/제품역량 ② 사업 추진 계획
- 기업 최종 선정 안내(진흥원 홈페이지 및 담당자 개별 이메일 안내)

3단계	성과평가	(외부) 위원회
-----	------	----------

- 마케팅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마케팅 활동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지출 증빙자료 검토
  - 신청금과 지출 증빙자료 금액 확인하여 최종 지원금 산정
  - 당해연도 지출 증빙내역(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확인
- (지급방식) 선(先)지출 후(後)지급
  - ※ 지원기업 법인 및 대표자(개인사업자) 계좌 입금
  - ※ 지급 시 백원단위 절사

□ 선정평가

- 정성평가 : (외부위원) 사업수행 적절성 등 평가

<정성평가표>

평가항목		서류 / 내용	기준	배점
가 점	수혜이력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2025년 수혜기업	10
정성평가 (100점)	사업 계획	지원의 필요성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기업/제품 역량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사업 추진계획/ 예산집행 계획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기대효과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합 계				100

0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본 사업은 당해연도 선정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함
- 참고사항 (예외)

운영지침

■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제6조 2항 ■

② 지원사업 중 당해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한다.  
다른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기업은 연간 최대 3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붙임 2】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input type="checkbox"/>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input type="checkbox"/>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년 면제	전액 환수
포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input type="checkbox"/>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신설 2021.03.04.>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